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2.

제 안 자 : 국토교통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안 제37조를 현행대로 하고, 안 제40조의2의 “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 협회”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협회”로 하며 현행 제40조와 유사한 수준에서 조문을 수정함(안 제40조의2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7조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생활물류 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생활물류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활물류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 제공
2.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운송수단 정비시설 제공
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노무 및 취업상담 등 구직 지원
4.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협회”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관련 협회(이하 “사업자협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항 전단·후단 및 제4항 중 “협회”를 각각 “사업자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협회에 관하여는”을 “사업자협회에 관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협회”를 각각 “사업자협회”로 한다.

안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협회의 설립)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는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관련 협회(이하 “종사자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종사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종사자협회를 설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사자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종사자협회는 제3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종사자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종사자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자협회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⑦ 종사자협회의 설립, 설립인가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를 삭제하고, 본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u>제37조(생활물류 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생활물류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 <u>② 생활물류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 제공</u> <u>2.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운송수단 정비시설 제공</u> <u>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노무 및 취업상담 등 구직 지원</u> <u>4.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u>	<u>제37조(생활물류 센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별로 생활물류 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u> <u>② 생활물류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 제공</u> <u>2.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운송수단 정비시설 제공</u> <u>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노무 및 취업상담 등 구직 지원</u>	<u>제37조(생활물류 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생활물류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 <u>② 생활물류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 제공</u> <u>2.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운송수단 정비시설 제공</u> <u>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노무 및 취업상담 등 구직 지원</u> <u>4.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u>

보호 및 복리 증진
을 위한 사항으로
서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생활물
류 쉼터의 설치·
관리에 필요한 사
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제40조(협회의 설립)

①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인증사업자
는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건전한 발
전 및 공동의 이익
을 도모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소

4. 그 밖에 생활물
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및 복리 증진
을 위한 사항으로
서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 쉼
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예
산의 범위에서 지
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생활물
류 쉼터의 설치·
관리에 필요한 사
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제40조(협회의 설립)
(현행과 같음)

보호 및 복리 증진
을 위한 사항으로
서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생활물
류 쉼터의 설치·
관리에 필요한 사
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제40조(소화물배송대
행서비스인증사업
자협회의 설립) ①

-----소

화물배송대행서비스
스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
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
다.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
에 설립등기를 함
으로써 성립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
법」 중 사단법인
에 관한 규정을 준

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관련 협회(이하 “사업자 협회”라 한다)----

② 사업자협회----

③ 사업자협회----

-----. 사업자협회

④ 사업자협회-----

⑤ 사업자협회에
관하여-----

용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⑦ 협회의 설립, 설립인가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0조의2(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의 설립)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는 소화물배송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⑥ -----
---사업자협회---

-----사업자
협회-----

---.

⑦ 사업자협회---

-----.

제40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협회의 설립)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는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관련 협회(이하 “종사자협

② 전국이륜차배달 라이더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전국이륜차배달 라이더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전국이륜차배달 라이더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2.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종사자의 교육·훈련

3. 소화물배송 관련 민간자격의 관리·운영

4.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종사자 대

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종사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종사자협회를 설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사자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종사자협회는 제3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종사자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상 금융 및 법률
지원

5. 그 밖에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와 관련하
여 정관으로 정
하는 사항

⑤ 국토교통부장관
은 전국이륜차배달
라이더협회의 발전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국이륜
차배달라이더협회
를 행정적·재정적
으로 지원할 수 있
다.

⑥ 전국이륜차배달
라이더협회의 설립
및 설립인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
은 공포 후 6개
월이 경과한 날

은 종사자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종
사자협회를 행정적
· 재정적으로 지원
할 수 있다.

⑦ 종사자협회의
설립, 설립인가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
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
월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국이륜차배달

라이더협회의 설

립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이륜차배달

라이더협회는 제

4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전국이륜

자동차배달라이

더협회로 본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782
----------	------

발의연월일 : 2025. 4. 14.

발 의 자 : 권영진 · 김상훈 · 박충권
이만희 · 김도읍 · 조승환
이성권 · 엄태영 · 박덕흠
배준영 · 강명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위해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가 재량행위로 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제 설치된 곳이 많지 않은 실정이며, 설치되더라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각종 플랫폼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 협회 외에도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관련 협회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생활물류 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를 위한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제40조의2 신설).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안 제37조를 현행대로 하고, 안 제40조의2의 “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협회”로 하며 현행 제40조와 유사하게 조문을 수정함(안 제40조의2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의 제목 중 “단체”를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단체”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협회”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관련 협회(이하 “사업자협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전단·후단 및 제4항 중 “협회”를 각각 “사업자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협회에 관하여는”을 “사업자협회에 관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협회”를 각각 “사업자협회”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협회의 설립)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는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관련 협회(이하 “종사자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종사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종사자협회를 설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사자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종사자협회는 제3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종사자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종사자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자협회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⑦ 종사자협회의 설립, 설립인가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장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u>단</u> <u>체</u>	제7장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u>및</u> <u>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단체</u>
제40조(<u>협회의 설립</u>) ① 소화물배 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생 활물류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 전 및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u>소화물배</u> <u>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u> (이하 “ <u>협회</u> ”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 다.	제40조(<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u> <u>증사업자협회의 설립</u>) ① ---- ----- ----- ----- <u>소화물</u> <u>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관</u> <u>련 협회</u> (이하 “ <u>사업자협회</u> ”라 <u>한다</u>)----- -----.
② <u>협회</u> 는 법인으로 한다.	② <u>사업자협회</u> -----.
③ <u>협회</u> 를 설립하려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u>협회</u> 가 정관을 변경하려 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u>사업자협회</u> ----- ----- ----- ----- <u>사업자협회</u> ----- -----.
④ <u>협회</u> 는 제3항에 따른 설립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에 설 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u>사업자협회</u> ----- ----- -----.
⑤ <u>협회</u> 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	⑤ <u>사업자협회에 관하여</u> ----- ----- -----

용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⑦ 협회의 설립, 설립인가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

⑥ -----사업자협
회-----
-----사업자협회-----
-----.

⑦ 사업자협회-----

-----.

제40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협회의 설립) ①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는 생활
물류서비스 관련 업무의 건전
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화
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관련
협회(이하 “종사자협회”라 한
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종사자협회는 법인으로 한
다.

③ 종사자협회를 설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사자협회가 정
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종사자협회는 제3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종사자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종사자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자협회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⑦ 종사자협회의 설립, 설립인가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